현안리포트 05-031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섬유수출 기회

2005.8

KOTRA 통상전략팀

<요 약>

□ 미국과 중미 6개국간 미-중미자유무역협정(이하 CAFTA)이 약 1년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미 하원에서 승인

□ CAFTA 협정 중 섬유교역 관련 주요 내용

○ 'yarn forward' 원칙 적용
- 미국 및 협정국 산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된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 특혜 적용

○ 역내에서 생산된 모든 섬유·의류제품은 수입관세 폐지

○ 특별 섬유 세이프가드 허용

○ 원산지 요건 입증 의무
- 수출국은 소정의 절차에 의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에 적합하게 제품이 생산되었음을 입증할 의무

○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산 원단사용 허용

○ 코스타리카에서 조립된 울 의류에 대한 특혜
- 원단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특혜관세 적용

○ 니카라과산 일부 면 및 합섬의류 제품에 대해 비원산지 원단 사용에 대해서 무관세 특혜 인정

□ 미국과 중미 국가 간 섬유교역 연대 강화

○ 중미 생산기지에서 미국산 원사 및 원단 구매 급증 예상

□ 중국산 제품 유입 급증에 대한 견제

○ 원산지 요건 강화, 불법환적 및 원산지 위조 처벌에 대한 세관 당국의 권한 강화 등으로 중국산 제품 유입 견제

□ 우리나라의 섬유 수출업계는 전략적인 해외생산기지 활용으로 수출의 차별화 전략 필요

<목 차>

Ⅰ.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개요 ····· 1
1. 추진현황 ····· 1
2. 섬유관련 주요 쟁점사항 ····· 2

Ⅱ.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상의 섬유관련 주요내용 ····· 3
1. 관세폐지 ····· 3
2.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 5
3. 원산지 규정 ····· 6
4. 통관행정 강화 ····· 7
5. 멕시코 및 캐나다산 원단사용 허용 ····· 8
6. 코스타리카 및 니카라과 특혜 ····· 9

Ⅲ. 시사점과 우리 섬유수출 기회 ····· 12

부 록 1. Annex 3.25 Short Supply List
2. Annex 3.29 특혜 비적용 품목 리스트

Ⅰ.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개요

1. 추진현황

□ 미국과 중미 6개국간 협상이 진행되던 미-중미자유무역협정(이하 CAFTA)이 약 1년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미 하원에서 승인

○ 중미 6개국 :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 2004년 협상 완료 이후, 중미 6개국은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놓고 미국 내 의회비준을 기다리던 상태였음.

○ 2005.6.30 미 상원 비준 (찬성 54, 반대 45)
2005.7.28 미 하원 비준 (찬성 217, 반대 215)

○ 동 협정은 그 동안 설탕 쿼터, 섬유 원산지 문제 등에 미국 내 관련 산업이 격렬하게 반대함에 따라 과거 10년 간 의회 비준이 미루어져 왔음.

- 중미국가에 관세철폐 등 무역특혜가 주어질 경우, 노조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등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강경 반대의견 대두

- 부시 행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 미국의 대외교역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산업계와 의회를 설득

○ 동 협정 발효 시 미국과 중미 6개국은 연간 3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예정

- 해당 중미 6개국 대미 수출의 80% 가량은 이미 양자협정 상의 특혜무역(CBI, GSP 등)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

2. 섬유관련 주요 쟁점사항

□ 섬유 원단 제조국의 인정문제 및 제3국산 원단 사용 허용 여부

○ 동 협정 내용 중 중미 생산기지에서 제3국산 원사 및 원단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삭제 요구

예) 니카라과는 제3국산 원부자재를 1억㎡까지 사용 허용
6개국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산 원부자재 2억㎡까지 사용 허용

○ 미 섬유업계는 미국산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관세 혜택 부여할 것을 주장

- 역내국은 미국 시장에 주요 상품(섬유의류 포함)에 대해 무관세로 수출 가능
  · 역내국산의 기준은 yarn기준 원산지 적용
  · 역외산 원사 및 직물로 봉제된 의류의 대미 수출 시에는 그 비중만큼 세금 부과

□ 외국산 섬유·의류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 교란 우려

○ 협정 발효 후, 무관세 혜택을 받는 중미산 제품이 대거 미국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우려

○ 섬유 수입쿼터 해제 이후, 중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장악에 따라 미국 관련업계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

○ 중미 생산기지로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하는 원사 및 원단 수출업계와 외국산 제품과 경합을 벌여야 하는 의류 제조업계가 각자의 이익에 따라 대립

Ⅱ.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상의 섬유관련 주요 내용

□ ‘yarn forward’ 원칙 적용 : 미국 및 협정국 산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된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무과세

○ 미국-협정국 간 섬유교역의 90% 이상이 동 요건에 부합

□ 경과기간 : 협정 발효 후 5년

1. 관세폐지

□ 협정 발효 즉시 역내에서 생산된 모든 섬유·의류제품에 대해서 역내 교역 시 수입관세 폐지

○ 관세폐지는 2004.1.1일부로 소급 적용되며, 이미 관세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환급 가능
-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동 관세환급은 아래의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① 전통 가내 수공업 제품
② 코스타리카에서 봉제된 울 의류제품[1)]
③ 니카라과 산 비원산지 제품[2)]

○ 신발, 가방 등 일부 품목은 동 협정의 대상품목에서 제외
- Annex 3.29에 명시 (부록 2. 참조)

---

1) 미국이 코스타리카 산 울 의류제품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7. 코스타리카 및 니카라과 특혜에서 설명

2) 미국이 니카라과에 역외 원부자재 사용을 허용하는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7. 코스타리카 및 니카라과 특혜에서 설명

□ 협정 발효 즉시 미국과 협정국 간의 모든 섬유 수량규제는 폐지

○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현재 대미수출 시 수량규제 적용받던 국가에 해당

<표 1> CAFTA 발효 후 폐지 대상 국별 수량규제 품목

해당국	카테고리	품 목
코스타리카	340/640	남성용 면 및 합섬 셔츠
	342/642	면 및 합섬 치마
	347/348	면 바지
	443	남성용 울 정장
	447	남성용 울 바지
도미니카 공화국	338/638	남성용 니트, 면, 합섬 셔츠
	339/639	여성용 니트, 면, 합섬 셔츠
	340/640	남성용 면 및 합섬 셔츠
	342/642	면 및 합섬 치마
	347/348	면 바지
	351/651	면 및 합섬 잠옷
	433	남성용 울 정장
	442	울 치마
	443	남성용 울 정장
	444	여성용 울 정장
	448	여성용 울 바지
	633	남성용 합섬 정장
	647/648	합섬 바지
엘발바도르	340/640	남성용 면 및 합섬 셔츠
과테말라	340/640	남성용 면 및 합섬 셔츠
	347/348	면 바지
	351/651	면 및 합섬 잠옷
	443	남성용 울 정장
	448	여성용 울 바지

자료원 : CAFTA 협정문

2.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 경과기간 중 특별 섬유 세이프가드 허용

○ 협정 발효 후, 일시적으로 정상무역관계 및 최혜국 대우 요건에 해당되는 정도의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 협정 발효 후 관세폐지 및 기타 특혜요건으로 인해 역내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협이 있는 경우 발동 가능

- 동 조치는 동일국가 동일 품목에 대해 1회만 허용

- 동 조치는 최장 3년간 적용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만 발동 가능

- 동 조치는 여타 무역조치와 중복해서 적용될 수 없음.

○ 동 조치를 위한 수입국은 수출국에 동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상을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

- 양 측이 보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타 물품에 대해 해당 규모만큼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 CAFTA 협정 상 특정 품목에 대한 유일한 세이프가드 조치

○ 미-중 WTO 가입 협상 시 1년 단위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허용 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강화된 규정

3. 원산지 규정

□ “원산지 제품(originating good)"의 정의

○ 방직(yarn spinning), 직조(fabric production), 재단(cutting), 조립(assembly) 등의 원단 제조과정이 미국 및 협정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 협정에서 정한 대로 세번변경이 일어나는 공정이 미국 및 협정국 영토에서 일어난 경우

○ 어느 하나 혹은 여러 협정국 내에서 비원산지 원료를 가공하거나 조립하여 세번변경이 일어난 경우
- 그러나 비원산지 부가가치가 전체의 10% 이하이어야 함.

○ 구체적 원산지 규정 (부록 4.1)
- 세번변경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명시

□ Short Supply List : 비원산지 제품의 미소량 사용에 대한 원산지 인정

○ 일부의 fabric, yarn, fiber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상업적 의미가 없는 수량만큼 사용되는 한,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여 무관세 혜택

- 협정문 Annex 3.25에 해당 품목 명시 (부록 1. 참조)

- 협정국은 타 협정국의 요청에 의해 제3의 협정국의 반대가 없는 한, 동 리스트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해당 품목 리스트를 엄격한 시한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부당한 무관세 혜택 방지

□ 봉사(sewing thread)기준 원산지 규정 신설

○ 일부품목에 대해 미국과 협정국의 봉사(sewing thread)를 사용한 경우, 원단 제조국에 상관 없이 무관세 혜택

- 대상품목 : 브래지어, 박스형 팬티, 파자마, Woven Dress 등 일부 의류 악세서리 및 made-up 섬유제품 (Annex 4.1에 명시)

- 단, 봉사(sewing thread)는 미국 및 협정국 내에서 완전생산[3]된 것이어야 함.

□ 탄성섬유(elastic fabrics) 원산지 기준 강화

○ 원사가 미국 및 협정국 역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4. 통관행정 강화

□ 원산지 요건 입증 의무

○ 수출국은 소정의 절차에 의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에 적합하게 제품이 생산되었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음.

○ 수입국은 수출국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생산공장 불시방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예) 미 세관당국(CBP)은 중미 협정국의 섬유생산 공장을 불시 방문,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할 수 있음.
예) 미 세관당국은 중미 협정국 내에서 역외국 제품이 불법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3) 완전생산(wholly-formed)의 의미는 방직, 직조, 재단, 봉제 등 모든 생산과정이 역내에서 일어난 것을 의미함.

□ 수출국이 원산지 충족요건 위반 시 수입국은 특혜조건을 철회할 수 있음.

□ 동 조항은 기존 NAFTA나 카리브해 연안국 특혜조치(CBTPA)에 비해 매우 강화된 것으로서 중국 등 아시아 제품이 역내국 산으로 둔갑하여 역내,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방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5. 멕시코 및 캐나다산 원단 사용 허용

□ NAFTA 회원국에 대한 누적원산지 인정

○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산 원단으로 협정국에서 생산한 woven apparel, denim apparel, wool apparel 등은 한정된 수량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

○ 멕시코 및 캐나다산 원단사용 가능 수량

- 최초 1억 평방미터까지 사용가능하며, 미국과 협정국 간 섬유교역 증가율에 비례하여 최대 2억 평방미터까지 증대 가능

- 1억 평방미터 사용 시 품목별 수량 분배
  · 울 : 최대 1백만 평방미터
  · 블루 데님 : 최대 2천만 평방미터
  · 면과 합섬 : 최대 4천5백만 평방미터

○ 멕시코와 캐나다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미국과 협정국에 같은 혜택 부여

6. 코스타리카 및 니카라과 특혜

□ 코스타리카에서 조립된 울 의류에 대한 특혜

○ 대상품목 : 남성용, 여성용 울 정장

- 카테고리 : 433, 435, 442, 443[4], 444, 447, 448
- HS코드 : 6203, 6204의 하위부류

<표 2> CAFTA 특혜관세 대상 코스타리카산 울 의류품목

카테고리	품 목	단 위
433	남성용 정장타입 자켓	다즌
435	여성용 정장타입 자켓	다즌
442	여성용 스커트	다즌
443	남성용 정장	벌
444	여성용 정장	벌
447	남성용 바지	다즌
448	여성용 바지	다즌

자료원 : CAFTA 협정문

○ 원단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MFN관세의 50%에 해당하는 특혜관세 적용

○ 동 특혜조항은 협정 발효 후 최초 2년간 적용

- 특혜 적용 대미수출 허용량 : 연간 총 50만 평방미터
- 각 품목별 단위는 평방미터로 환산되어 적용

□ 니카라과산 일부 면 및 합섬의류 제품에 대해 비원산지 원단 사용에 대해서 무관세 특혜 인정

4) 카테고리 435의 경우, HS코드 6204.31, 6204.33, 6204.39.aa, 6204.39.dd에 해당하는 정장 타입의 자켓만 해당

<표 3> CAFTA 특혜관세 대상 니카라과산 면 및 합섬 의류품목

카테고리	품 목	단 위
237	운동복, 야외복 등	다즌
239	유아용 의류 및 의류 장식품	킬로그램
330	면 손수건	다즌
331	면 장갑	12켤레
332	면 양말	12켤레
333	남성용 면 정장타입 코트	다즌
334	남성용 면 기타 코트	다즌
335	여성용 면 코트	다즌
336	면 드레스	다즌
338	남성용 면 니트셔츠	다즌
339	여성용 면 니트셔츠 및 블라우스	다즌
340	남성용 면 셔츠 (니트 제외)	다즌
341	여성용 면 셔츠 및 블라우스 (니터 제외)	다즌
342	면 스커트	다즌
345	면 스웨터	다즌
347	남성용 면 바지	다즌
348	여성용 면 바지	다즌
349	브래지어, 기타 신체보정용 의류	다즌
350	면 드레싱 가운	다즌
351	면 잠옷, 파자마	다즌
352	면 속옷	다즌
353	남성용 면 오리털 코트	다즌
354	여성용 면 오리털 코트	다즌
359	기타 면 의류	킬로그램
630	합섬 손수건	다즌
631	합섬 장갑	12켤레
632	합섬 양말	12켤레
633	남성용 합섬 정장타입 코트	다즌
634	기타 남성용 합섬 코트	다즌
635	여성용 합섬 코트	다즌
636	합섬 드레스	다즌
638	남성용 합섬 니트 셔츠	다즌
639	여성용 합섬 니트 셔츠 및 블라우스	다즌
640	남성용 합섬 셔츠 (니트 제외)	다즌
641	여성용 합섬 셔츠 및 블라우스 (니트 제외)	다즌
642	합섬 스커트	다즌
643	남성용 합섬 정장	벌
644	여성용 합섬 정장	벌
645	남성용 합섬 스웨터	다즌
646	여성용 합섬 스웨터	다즌
647	남성용 합섬 바지	다즌

648	여성용 합섬 바지	다즌
649	합섬 브래지어, 기타 신체보정용 의류	다즌
650	합섬 드레싱 가운	다즌
651	합섬 잠옷, 파자마	다즌
652	합섬 속옷	다즌
653	남성용 합섬 오리털 코트	다즌
654	여성용 합섬 오리털 코트	다즌
659	기타 합섬 의류	킬로그램

자료원 : CAFTA 협정문

○ 기간별 비원산지 원단 사용 허용량

- 협정 발효 후 최초 5년 : 연간 최고 1억 평방미터
- 6년째 연도 : 8천만 평방미터
- 7년째 연도 : 6천만 평방미터
- 8년째 연도 : 4천만 평방미터
- 9년째 연도 : 2천만 평방미터

- 각 품목별 단위는 평방미터로 환산되어 적용

○ 협정 발효 후 10년째 되는 연도부터 동 특혜 폐지

○ 니카라과는 역외산 원단 1억평방미터 허용치 만큼 미국산 원단을 수입키로 추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중국산 원단을 사용가능한 역외산 원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미국과 별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Ⅲ. 시사점 및 우리 섬유수출 기회

□ 미국과 중미 국가 간 섬유교역 연대 강화

○ 중미 생산기지에서 미국산 원사 및 원단 구매 급증 예상

- 역내산 원산지 요건 충족, 즉 yarn-forward rule에 따라 무관세 등 특혜무역조건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 현재 중미국가는 미국 제2의 원사 및 원단 수출시장

○ 미 섬유업계는 CAFTA를 통해 중미 국가와 섬유교역에서의 상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통계에 따르면 CAFTA 협정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류제품의 71%가 미국산 원사와 원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국산 의류제품의 경우 대미 수출의 0.1%만이 미국산 원사와 원단 사용

○ 미 의류업계는 중미산 중저가 의류제품이 무관세 수입되는 것을 크게 환영

-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니카라과 및 과테말라 등지로의 투자확대를 고려하는 분위기 감지되기 시작

□ 중국산 제품 유입 급증에 대한 견제

○ 원산지 요건 강화, 불법환적 및 원산지 위조 처벌에 대한 세관 당국의 권한 강화 등으로 중국산 제품 유입 견제

○ CAFTA 협정이 지난 10여년 간 미국 내에서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었음에도 불구, 최근 미 행정부가 이를 전격 승인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미국시장 장악에 미 관련 업계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

- 섬유쿼터 해제 후 중국산 의류제품의 대미수출은 최고 1,700% 증가한 경우도 있음.

○ 미 섬유업계는 CAFTA를 통해 중미국가로의 미국산 원사 및 원단 수출 증가와 함께 중국산 제품 유입 급증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 섬유업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섬유 생산기지를 이전해 왔으나, 미국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중미 생산기지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미 직접수출 면에서는 무관세 등 특혜조건을 부여받는 중미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열세 조건

○ 금번 협정국 등 중미국가들은 봉제의류 등이 주요 대미 수출품이었으나, 최근 섬유쿼터 해제 이후 제품 고급화, 생산공정 고도화를 통한 섬유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한 바 있음.

- Full-Package Manufacturing[5] 방식 등 미국시장과의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구사

○ 우리나라의 섬유 수출업계는 고급 디자인 제품은 국내 생산, 일반 봉제제품은 해외생산기지 활용 등의 전략을 통해 경쟁국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

5) 방적-편직염색-패턴디자인-봉제-완성까지의 전 과정 협업형태

부록 1. : Annex 3.25 Short Supply List

Annex 3.25

Short Supply List

1	무명 벨벳 직물 품목 번호 5801.23 : 기타 웨프트 직물
2	코듀로이 직물 품목 번호 5801.22 : 절단된 골덴 면의 무게가 85퍼센트 또는 그 이상, 센티미터 당 7.5골 이상을 포함
3	품목 번호 5111.11 : 1제곱미터 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 또는 품목 번호 5111.19 : 기타, 영국 Harris Tweed Association, Ltd.의 규율에 의해 직조되고 인증 받은, 너비 76센티미터 이하의 직기를 이용해 손으로 짠 직물
4	품목 번호 5112.30 : 기타(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평방미터 당 340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섬수모의 무게가 20퍼센트 이하가 아닌 것 그리고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무게가 15 퍼센트 이하가 아닌 것
5	품목 번호 5513.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또는 품목번호 5513.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얇은 평직삼베 직물, 사각 조직, 1가닥이 76미터 이상, 평방센티미터당 60에서 70의 날실과 씨실 포함, 평방미터당 무게가 11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6	품목 번호 5208.21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5208.22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5208.29 : 기타 직물의 것, 5208.31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5208.32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5208.39 : 기타직물, 5208.41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5208.42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5208.49 : 기타직물, 5208.51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5208.52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또는 5208.59 : 기타 직물, 평균 방사 번호가 135미터를 초과하는 것
7	품목 번호 5513.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또는 5513.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사각직물이 아닌 것, 평방센티미터당 70개 이상의 날실과 씨실을 포함, 평균 방사 번호 70미터를 초과한 것
8	품목 번호 5210.21 : 평직물 또는 5210.31 : 평직물, 사각 직물이 아닌 것, 평방센티미터당 70개 이상의 날실과 씨실을 포함, 평균 방사 번호 70미터를 초과한 것
9	품목 번호 5208.22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5208.32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사각 직물이 아닌 것, 평방센티미터당 75개 이상의 날실과 씨실을 포함, 평균 방사 번호 65미터를 초과한 것
10	품목 번호 5407.8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407.82 : 염색한 것, 또는 5407.83 : 상이한 색사로 된 것, 평방미터당 170그램 이하이며, dobby부착물에 의해 형성된 dobby직
11	품목 번호 5208.42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또는 5208.49 : 기타직물, 사각 직물이 아닌 것, 평방센티미터당 85개 이상의 날실과 씨실을 포함, 그리고 평균 방사 번호 85미터를 초과한 것

12	품목 번호 5208.51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사각 직물의 것, 평방센티미터당 75개 이상의 날실과 씨실 포함, 단사로 만들어진, 평균 방사 번호가 95미터와 같거나 초과하는 것
13	품목 번호 5208.41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사각 직물, 깅엄 패턴, 평방센티미터당 85개 이상의 날실과 씨실, 단사로 만들어진, 평균 방사 번호가 95미터와 같거나 초과하는 것, 그리고 날실과 씨실의 다양한 색상의 변화에 의한 체크무늬 효과로 특징지어지는 것
14	품목번호 5208.41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천연염색 컬러의 날실과 흰색 또는 천연염색 컬러의 씨실, 평균 방사 번호 65미터 초과하는 것
15	써클러 니트 직물, 완벽 면사, 하나의 방사당 100미터 번호 초과, 품목번호 6006.21.aa : 표백하지 않은 것 또는 표백한 것, 6006.22.aa : 염색한 것, 6006.23.aa : 상이한 색사의 것, 또는 6006.24.aa : 날염한 것
16	써클라 니트 조직의 100% 폴리에스테르의 밀착된 팬(벨벳 비슷한 옷감) 벨루아 직물, 품목 번호 6001.92.aa : 인조섬유제의 것
17	비스코스 레이온사 품목 번호 5403.31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또는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의 것) 또는 5403.32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의 것)
18	코움드 케시미어사, 코움드 캐시미어 블렌드, 또는 코움드 카멜 헤어 품목 번호 5108.20.aa : 코움한 것
19	허리밴드에 쓰이는 2개의 엘라스토메릭 직물의 품목 번호 5903.90.bb : 기타 (1)직물에 짜여 들어가는 주름 라인이 있는 메리야스직 외-가연성 소재. 이 직물은 45밀리미터 너비의, 좁게 짜여진, 합성 섬유 (49% 폴리에스테르/ 43% 엘라스토메릭 필라멘트/ 4.4온스의 8%나일론, 110/110 스트레치, 그리고 덜(dull)-방사), 접착성(열가소성 수지) 코팅의 스트레치 엘라스토메릭 소재. 그 45밀리미터 너비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솔리드 8밀리미터가 딸린, 접히는 3밀리미터 솔기가 있는 34밀리미터 솔리드; (2)제품의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접착성(열가소성 수지) 코팅처리 된 메리야스직 내-가연성 소재. 이 직물은 40밀리미터 합성섬유 베이스에, 6번 타입 나일론 80% 그리고 4.4온스의 20% 엘라스토메릭 필라멘트, 110/110 스트레치, 그리고 덜(dull)-방사로 구성된 스트레치 엘라스토메릭 가연성 소재.
20	품목 번호 5210.21 : 평직물 또는 5210.31 : 평직물, 사각 조직이 아니고, 평방 센티미터당 70개 이상의 날실과 씨실을 포함하고, 평균 방사 번호 135미터 초과하는 것
21	품목 번호 5208.22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또는 5208.32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사각 조직이 아니고, 평방 센티미터당 75개 이상의 날실과 씨실을 포함하고, 평균 방사 번호 135미터 초과하는 것
22	품목번호 5407.8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5407.82 : 염색한 것, 또는 5407.83 : 상이한 색사로 된 것, 평방미터당 무게 170그램 이하, 평균 방사 번호 135미터 초과의 dobby부착물에 의해 형성된 dobby직을 가지고 있는 것
23	큐프라모니엄 레이온 필라멘트사, 품목번호 5403.39 : 기타
24	품목번호 5208.42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또는 5208.49 : 기타직물, 사각 조직이 아니고, 평방 센티미터당 85개 이상의 날실과 씨실을 포함하며, 평균 방사 번호 85미터 초과하는 것, 만약 직물이 옥스퍼드직일 때는 평균 방사 번호가 135미터 초과하는 것
25	방사 번호 51에서 85미터의 싱글 링-스펀(ring-spun)사, 50퍼센트 또는 그 이상 포함하

	되 85퍼센트 이하, 무게 0.9의 데니어 또는 더 고운 마이크로 형태의 섬유조직, 미국산 엑스트라 롱 프리마 코튼과 혼방된, 품목번호 5510.30 : 기타의 사(주로 면과 혼방한 것)
26	비스코스 레이온 토우 품목번호 55.02.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 토우
27	플란넬 직물로 짜인 100퍼센트 면, 다른 색상의 싱글 링-스펀(ring-spun)사, 방사 번호 21부터 36까지의 것, 품목 번호 5208.43.aa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X2 능직구조, 평방미터당 200그램 이하의 것
28	방사 번호 93미터를 초과하는 것: 품목번호 5208.21.aa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5208.22.aa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5208.29.aa : 기타 직물의 것, 5208.31.aa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5208.32.aa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5208.39.aa : 기타직물, 5208.41.aa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5208.42.aa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5208.49.aa : 기타직물, 5208.51.aa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의 것), 5208.52.aa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5208.59.aa : 기타 직물, 5210.21.aa : 평직물, 5210.29.aa : 기타, 5210.31.aa : 평직물, 5210.39.aa : 기타 직물, 5210.41.aa : 평직물, 5210.49.aa : 기타 직물, 5210.51.aa : 평직물, 또는 5210.59.aa : 기타 직물
29	품목번호 5111.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이하의 것, 또는 5111.19 : 기타, 를 생산하기 위한 카디드 캐시미어의 특정 방사 또는 카디드 카멜 헤어의 것의 품목 번호 5108.10.aa : 카드한 것
30	품목 번호 5509.31 : 단사, 의 생산을 위한 애시드-다이어블 아크릴(acid-dyeable acrylic) 토우 품목 번호 5501.30 : 아트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31	직조되지 않은 편편한 나일론사 품목 번호 5402.41.aa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그 방사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1)나일론의 것, 7 데니어/5 필라멘트 나일론 66 직조되지 않은(편편한) 세미-덜(semi-dull) 방사; 멀티필라멘트, 꼬임이 없는 또는 50번/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꼬임; (2) 나일론의 것, 10 데니어/7 필라멘트 나일론 66 직조되지 않은(편편한) 세미-덜(semi-dull) 방사; 멀티필라멘트, 꼬임이 없는 또는 50번/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꼬임; 또는 (3) 나일론의 것, 12 데니어/5 필라멘트 나일론 66 직조되지 않은(편편한) 세미-덜 방사; 멀티필라멘트, 꼬임이 없는 또는 50번/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꼬임
32	품목 번호 5515.13.aa :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울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코움한 것, 그리고 울 무게의 36퍼센트 이하를 포함한 것
33	85% 스펀 실크의 메리야스직/15% 울(평방미터당 210그램), 품목번호 6006.90.aa : 기타
34	품목 번호 5512.99 : 기타, 합성스테이플섬유의 무게 100% 포함, 사각 직물이 아닌 것, 평균 방사 번호 55미터 초과한 것
35	품목 번호 5512.21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또는 5512.29 : 기타, 100% 아크릴 섬유의 것, 평균 방사 번호 55미터 초과한 것
36	레이온 필라멘트 재봉사, 품목 번호 5401.20 :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의 것
37	97% 면의 포플린, 링 스펀 직물, 3% 라이크라, 품목 번호 5208.32.bb :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의 것)
38	폴리에스테르/나일론/합성 스판덱스 트라이-블렌드(74/22/4%) 직물, 품목 번호 5512.99.aa : 기타
39	폴리에스테르/레이온/스판덱스(62/32/6%)의 투-웨이 스트레치 직물, 품목 번호

	5515.19.aa : 기타
40	폴리에스테르/레이온/스판덱스(71/23/6%)의 투-웨이 스트레치 직물, 품목 번호 5515.19.aa : 기타
41	염색한 레이온 블렌드(70% 레이온/30% 폴리에스테르) 헤링본 능직 직물, 평방미터당 무게 200그램 이상인 것, 품목 번호 5516.92 : 염색한 것
42	100% 레이온 헤링본 날염 직물, 평방미터당 무게 200그램 이상인 것, 품목 번호 5516.14 : 날염한 것
43	리버스 레이스, 품목 번호 5804.21 : 인조섬유제의 것 또는 5804.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부록 2. : Annex 3.29 특혜 비적용 품목 리스트

Annex 3.29
특혜 비적용 품목 리스트

품목번호	설명
3005.90	3005.90 : 기타,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ex 3921.12 ex 3921.13 Ex 3921.90	3921.12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3921.13 : 폴리우레탄의 것, 3921.90 : 기타, 직조된, 메리야스직의,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되거나 또는 얇은 판으로 덮힌 직조되지 않은 직물
Ex 6405.20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울펠트의 갑피와 바닥의 신발류
Ex 6406.10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복강재는 제외), 외피 부분의 50% 또는 그 이상이 직물재료인 것의 신발류
Ex 6406.99	6406.99 : 기타 재료제의 것, 직물 재료의 레그 워머 그리고 각반
6501.00	6501.00 :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레토우 및 맨션(슬릿맨숀을 포함한다)
6502.00	6502.00 : 모체(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것)
6503.00	6503.00 :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의 모체 또는 플래토우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4.00	6504.00 : 모자(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5.90	6505.90 : 기타, 모자 및 그 외 쓸 것, 메리야스의 것과 원단상의 레이스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
8708.21	8708.21 : 안전벨트
8804.00	8804.00 :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13.90	9113.90 : 3. 기타, 방직용 섬유 직물류의 시계 줄, 밴드, 그리고 팔찌
9502.91	9502.91 :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Ex 9612.10	9612.10 : 리본, 인조섬유의 직조 리본, 너비 30밀리미터 이하의 것 이외의 영구적으로 카트리지에 넣는 것